

# 행 정 자 치 부

## 시 정 요 구

제 목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 누락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내 용

경상남도 창원시 등 12개 시·군에서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과세관청에서는 취득세 감면적용 이후 일정 유예기간 동안 해당 과세물건이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 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러나,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아래 [표]와 같이 232건 / 113,581천원의 차량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고 부과누락 하였다.

[표] 중고 매매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추정내역

| 지자체명  | 건수  | 금액(원)       | 지자체명        | 건수  | 금액(원)      |
|-------|-----|-------------|-------------|-----|------------|
| 합 계   | 232 | 113,581,650 | 창 녕 군       | 2   | 332,530    |
| 거 창 군 | 2   | 155,380     | 소 계         | 107 | 72,856,220 |
| 고 성 군 | 3   | 308,150     | 창원시 마산○○○○과 | 40  | 24,869,450 |
| 김 해 시 | 48  | 17,984,220  | 성산구         | 3   | 1,232,910  |
| 남 해 군 | 1   | 202,400     | 의창구         | 60  | 45,350,560 |
| 밀 양 시 | 3   | 342,870     | 진해○○○○과     | 4   | 1,403,300  |
| 사 천 시 | 47  | 15,981,060  | 하 동 군       | 1   | 82,550     |
| 산 청 군 | 2   | 282,340     | 합 천 군       | 4   | 321,330    |
| 진 주 시 | 12  | 4,732,600   | -           | -   | -          |

※ 자료 :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 상세내역 별첨(별송)

조치할 사항            창원시장, 진주시장, 사천시장, 김해시장, 밀양시장, 창녕군수, 고성군수, 남해군수, 하동군수, 산청군수, 거창군수, 합천군수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로 부과누락한 차량 취득세 등 232건 / 113,581천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